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이태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 서울시가 각종 공공급식시설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의 공공급식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3조제1항9호를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에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급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본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뿐만 아니라 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

거리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